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\*\*\*\*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연구팀 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박수연 [6560]/E-mail: sypark.kma@gmail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4-12891호

시행일자 2020. 1. 30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과 학회장, 각 과 의사회장

참 조  
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청구  
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- 보험급여과-463호(2020.01.29.)

2. 위와 관련, 복지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,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제도 진료를 받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.

- 다음 -

-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진료비 지원대상자(확진,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)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행위별 수가 적용
-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